



무선국 재허가 신청 안내

평소 전파방송통신업무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기관, 단체, 기업)께서 운용하시는 무선국 중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무선국에 대하여 **재허가 방법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의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는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무선국 : 2025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무선국**

□ **재허가 신청기간 :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우 편 : (우)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무선국업무과
- 방 문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2층)
- 팩 스 : 033)660-2849로 보내신 후 전화로 담당자에게 수신여부 확인
- 인터넷 : 공인인증서 필요(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첨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접속→민원신청→인적사항 입력
 →민원서식입력→공인전자서명확인→민원수수료결제(※국가기관/지자체 후납가능)
 →접수내역확인→처리결과 확인(SMS통보)→나의 민원/전자민원발급(허가증 출력)

□ 수수료

- 금 액 : 1국 당 신청수수료 납부(붙임 표 참조)
- 납부방법
 - 계좌입금 : 우체국계좌 201202-01-004558 강릉전파관리소 수입금출납공무원
 - * 계좌입금 시 담당자 연락 후 입금 확인 필요
 - 우 편 : 우체국 통상환으로 우편 송부
 - 방 문 : 무선국업무과 현금 납부

□ 전화번호

담당부서	시설자	담당자 전화번호	FAX
무선국업무과	공기업	033)660-2946	033)660-2849
	국가기관	033)660-2945	
	지방경찰청		
	지방자치단체/소방	033)660-2842	
	선박국(국가기관)	033)660-2844/2848	
	일반기업	033)660-2948	

강릉 전 파 관 리 소 장

[붙임]

[별표 1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 1항 관련)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허가신청 수수료	재허가신청 수수료	변경허가신청 수수료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은 제외한다)과 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1만2천원 2만3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1만1천원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	50W 미만 50W 이상	4천원 1만1천원	4천원 6천원	4천원 6천원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국 및 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1만원 2만8천원	— —	— —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50W이상 100W 미만 100W 이상	5천원 1만1천원 1만6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4천원
전파응용설비	50W 미만 50W 이상	5천원 1만원	— —	4천원 7천원
그 밖의 무선국	50W 미만 50W이상 100W 미만 100W이상 500W 미만 500W 이상	1만5천원 2만2천원 4만원 4만4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